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(신종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-26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3. 20.

발 의 자 : 신종갑, 서종수, 김영미,
김윤정, 김효식, 문정애,
이필레, 이학래, 전승학
(9명)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 등,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
(안 제3조)

다.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,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, 근무환경 개선, 지원사업 등을 포함함(안 제6조)

- 마.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사업,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,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,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법률 제11442호, 2012.11.24 시행) 제2조, 제3조
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(법률 제12617호, 2014.7.1 시행) 제2조, 제15조의2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불필요

6. 기타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입법예고 : 2015. 3. 20 ~ 3. 25(제출된 의견 없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

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
2.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4.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[시행 2012.11.24.] [법률 제11442호, 2012.5.2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"사회복지사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(이하 "사회복지법인 등"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
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14.7.1.] [법률 제12617호, 2014.5.20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, 2014.5.20.>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 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아. 「정신보건법」

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차. 「입양특례법」

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
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
파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
너. 「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- 더. 「의료급여법」
- 러. 「기초연금법」
- 며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- 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- 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쳐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- 커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
2. "지역사회복지"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3. "사회복지법인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4. "사회복지시설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5. "사회복지관"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6. "사회복지서비스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, 재활, 직업 소개 및 지도,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7. "보건의료서비스"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11.8.4.]

제15조의2(사회복지의 날)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,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8.4.]